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 권한의 사무 일부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삭제

(안 제1조)

나.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삭제(안 제2조)

다.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삭제(안 별표 1)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회사무국장·출장소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출장소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사무중 의회사무국장·출장소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사무 중 출장소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으로 한다.

별표 1 내무 행정의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내무행정의 제2호, 제3호를 각각 제1호, 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u>의회사무국장·출장소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u>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출장소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u> ----- ----- ----- ----- -----.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u>사무중 의회사무국장·출장소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u> 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위임사항) ----- ----- <u>사무 중 출장소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u> ----- -----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2021. 1. 12., 전부개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 관 부 서		총 무 과
입 안 자	과 장	박 주 영
	담 당	강 유 현
	담 당 자	박 민 주 (480-6773)